

(재결례) 비영리영업도 영업보상대상이다.

[중토위 2022. 1. 13. 재결]

재결요지

혈액원사업에 대한 영업손실보상을 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
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은 영리여부를 가
리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, ‘혈액원사업’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같은 규
제 제47조 각 항이 정하고 있는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이 아니라 할 수는 없으므로 서울 중앙혈액원
의 영업손실보상 주장을 받아들여 보상하기로 한다.